

경 영 전 략 자 문 위 원 회
운 영 규 정

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자문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17.12.29. 규정 제7호

개정 2019.12.16. 규정 제77호

개정 2020.09.18. 규정 제8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의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경영 전략을 위하여 자문기구인 부천도시공사 경영전략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경영전략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공사 중장기전략수립의 자문
2. 고객만족 및 성과관리체계 확립 추진대책에 관한 자문
3. 신경영기법의 소개 및 공사 적용에 관한 자문
4. 그 밖에 공사 경영전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관한 자문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12.16.>

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공사 상임이사, 기업경영 컨설턴트, 회계사, 공기업 관련 교수 및 전문가, 부천시 관련부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5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의2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출석자 등”이라 한다)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0.09.18.]

제6조(의견청취등)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
2.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
3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, 참고인,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요청

제7조(위원의 해촉)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

제8조(간사) 사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직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(원격영상회의 방식을 포함한다)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 직원 및 공사 관계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자료의 사전수집, 회의안건의 사전검토, 별도의 자문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09.18.]

부 칙

(2017.12.29. 규정 제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2019.12.16. 규정 제7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2020.09.18. 규정 제8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